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실시 예정인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관악구청장

1. 열람기간

가. 일 자 : 2026. 7. 23.(목) ~ 2026. 7. 31.(금) (※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시 간 : 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열람장소 : 관악구청 본관 6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3. 열람내용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서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 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2) 제출서류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외체류 증명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마.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관련 이의신청, 대리인 지정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www.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dx.do?cafeUrl=silim4>)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서식 각 1부.

[서식1]

이의신청서

1.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2. 이의신청 내용

붙임 : 증빙자료 1부.

상기 본인은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열람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날인

관악구청장 귀하

